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28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독서실 폐관 및 보훈대상자 요금을 할인대상자에 추가하고 공연장 객석 증설에 따른 대관료 등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독서실 폐관에 따라 독서실 사용시간 삭제 (안 제9조)
- 나. 보훈관계 법령 할인대상자 추가, 여성할인제도 정비 (제13조의3)
- 다. 공연장 리모델링 및 객석 증설에 따른 대관료 인상 (별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1. 10. 14. ~ 11. 3.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4) 지역경제과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의결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음
- 6) 제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1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관료”란 센터 내 공연장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중 “대홍로 20길”을 “대홍로20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동일한 시설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0시까지로 하되, 독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를 “10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수강료”를 “강습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을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를 “대관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료”를 “입장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때 :”를 각각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본 항 제1호”를 “제1호”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를 “대관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때 : 납부된 사용료”를

“때: 납부된 대관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시: 납부된 사용료”를 각각 “시: 납부된 대관료”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시: 사용료”를 “시: 대관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때:”를 “때:”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강습료등의 납부 및 반환)”을 “(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습료등)”을 “(강습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습료등”을 “강습료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5조에 따라 센터 입장을 제한 받은 사람의 강습료 등은 입장제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의3제1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제13조의3제2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할인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대관사용자가 기획·주관하는 공연의 공연장 대관료는 제13조의3의 할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제1호. 대관료

가목. 일반기준

- 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기본사용시간은 **회당 오전(9:00~12:00)은 3시간, 오후(12:00~22:00)는 4시간, 심야(22:00~익일 6:00)는 1시간을 기본 사용시간으로 하며**, 종합체육관, 소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기본사용시간은 **회당 1시간으로 한다.**
-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공연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할증하여 적용하고,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사용료에 10퍼센트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할증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한다.
-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 개별기준의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 기본대관료를 적용한다. 다만,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하며 “종합체육관, 소체육관”은 기본대관료를 100퍼센트 적용한다.
- 5)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개별기준에 따른다.
- 6) 개별기준 중 1)부터 6)까지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 7) <삭제 2020.7.9.>
- 8) <삭제 2020.7.9.>
- 9)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사용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은행영업일 기준) 센터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며,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관사용자가 사전 대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에는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0)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나) 1일 2회 이상 공연할 경우 2회차부터는 기본대관료에 2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다) 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대관료에 30퍼센트를 할인한다.
- 라) 리허설, 준비, 철수에 따른 사용시간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경우 기본대관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공연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 바) 2개 항목 이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11)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목. 개별기준

1) 대공연장(아트홀 맥)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클래식, 국악	연극,무용, 재즈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 공연	방송(촬영), 행사
오전	3시간	900,000	1,200,000	1,500,000	1,800,000	2,100,000
오후	4시간	1,200,000	1,600,000	2,000,000	2,400,000	2,800,000
심야	1시간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2) 소공연장(플레이 맥)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재즈, 뮤지컬, 오페라, 대중음악공연	방송(촬영), 행사
오전	3시간	270,000	390,000	540,000
오후	4시간	360,000	520,000	720,000
심야	1시간	90,000	130,000	180,000

3) 삭제 <2013.12.26>

4) 체육관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종합체육관	1시간	50,000
소체육관	1시간	10,000

5) 삭제

6) 그 밖의 시설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스튜디오1(다목적홀)	1시간	30,000	
스튜디오2(문화동 2층)	1시간	30,000	
스튜디오3 (문화동 3층)	연습	1시간	35,000
	공연	1시간	55,000
	행사	1시간	85,000
	전시	1일	150,000
연습실	1시간	15,000	
전시실(갤러리 맥)	1시간	15,000	
공연장테라스(3층)	1일(평일)	300,000	
	1일(주말)	330,000	
	· 공연장, 갤러리 대관 시에만 대관 가능 · 운영기간·시간: 4월~9월, 09:00~18:00		

7) 주차요금

구 분		주 차 요 금
일 반 차 량		- 기본 30분 1,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공연관람 차량		- 3시간 3,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시설 대관차량	대극장	- 차량 5대까지 무료 -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000원 판매
	소극장 체육시설	- 차량 3대까지 무료 -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000원 판매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 추가 10분당 500원
그 밖의 차량		-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무료 - 업무용차량(수강신청 및 방문 등)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1시간 면제(추가 10분당 500원, 1시간 초과시 “주차 재확인”차량 면제) -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 비고

1. 시간제에 따른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000원으로 한다.
2.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한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 감면 대상차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감면한다.
4.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5.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호.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목. 일반기준

- 1)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나목. 개별기준

- 1)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비고
문화강좌프로그램		10,000 ~ 40,000	월 기준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30,000 ~ 200,000	
	중·고생이하	25,000 ~ 200,000	
유아 · 초등생 교육프로그램		25,000 ~ 150,000	
문화예술전문과정		40,000 ~ 200,000	
단기 프로그램		2,000 ~ 20,000	일 기준

- 2)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수영 이용료		그룹지도 강습료
		정기	1일 입장	
사용료	25,000 ~ 80,000	25,000 ~ 70,000	1,500 ~ 4,500	100,000 ~ 200,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공휴일, 모자수영·가족수영·월 자유수영 회원은 제외) · 공휴일의 1일 입장 자유수영 이용료는 20퍼센트 할증 			

나) 헬스

(단위 : 원/월)

구분	일반	중·고생	그룹지도	개인지도	1일 입장
사용료	35,000 ~ 50,000	25,000 ~ 45,000	100,000 ~ 200,000	25,000 ~ 50,000 (1시간/회)	3,000 ~ 10,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공휴일 1일입장은 20퍼센트 할증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분	정기	골프 아카데미	개인지도	스크린 타석	1일입장	
					기본2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55,000 ~ 100,000	30,000 ~ 100,000	100,000 ~ 150,000 (1시간/1회)	7,000 ~ 20,000	6,000	2,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 공휴일 1일입장은 20퍼센트 할증 					

제3호. 삭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5. ~ 8. (생 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대관료”란 센터 내 공연장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p>
<p>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 특별시 마포구 <u>대흥로 20길 28 (대흥동)</u>로 한다.</p>	<p>제3조(위치) ----- ----- <u>대흥로20길</u> ----- -----.</p>
<p>제6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u>위원으로</u> 구성한다.</p> <p>③·④ (생 략)</p>	<p>제6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u>구청장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 허가한다.</u></p>	<p>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u>구청장은 동일한 시설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다만,</u></p>

1.·2. (생략)

제9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되, 독서실의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② (생략)

③ 삭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수강료의 범위만 정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 : 사용예정

공연장의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시간) ① -----

10시-----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④ -----
-- 강습료-----
-----.

제13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대관료 -----
-- . ----- 입장료

-----.

1. -----
----- 때: -----

일의 10일 전까지 납부

2.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 :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납부

3.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본 항 제1호 및 제2호의 납부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 사용계약 체결 시 납부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75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

2. -----
때: -----

3. -----
제1호 -----
----- 경우: -----

② ----- 대관료 -----

1. -----

----- 때:
납부된 대관료 -----

2. -----

가. -----
----- 시: 납부된 대관료 -----

나. -----
----- 시: 납부된 대관료 -----

다. -----

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
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60일 전에 사
용을 취소하는 때 : 전액반환.
다만 계약금은 제외한다.

제13조의2(강습료등의 납부 및 반

환) ① 센터에서 설치·운영하
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센터의
각종 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제1
항에서 정한 강습료 및 이용료
(이하 “강습료등”이라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지
정할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강습료
들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체육시
설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 반환한다.

③·④ 삭 제

⑤ 제15조에 따라 강제퇴출자의
강습료등 반환은 퇴출 결정일까
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 시: 납부된 대관
료-----

라. ----- 시:
대관료-----

3. -----

----- 때: -----.
-----.

제13조의2(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

----- “강습료 등”-----
-----.

② ----- 강습료
등-----

-----.

⑤ 제15조에 따라 센터 입장을
제한 받은 사람의 강습료 등은
입장제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
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의3(할인)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4. (생략)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6. ~ 11. (생략)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신설>

제13조의3(할인)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 11. (현행과 같음)

<삭제>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 ~ ④ (생략)

<신 설>

[별표] 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 기준

제1호. 시설사용료
가목. 일반기준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② -----

----. 다만, 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할인할 수 있다.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관사용자가 기획·주관하는 공연의 공연장 대관료는 제13조의3의 할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 기준

제1호. 대관료

가목.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기본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고, 종합체육관, 소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기본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

1)

----- 회당 오전
(9:00~12:00)은 3시간, 오후
(12:00~22:00)는 4시간, 심야
(22:00~익일 6:00)는 1시간
을 기본 사용시간으로 하며,

----- 회당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9)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사용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은행영업일 기준) 센터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며, 공연장 및 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연장 및 전시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

9)

----- 20퍼센트

관사용자가 사전 대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에는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
 및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0) (생 략)

나목. 개별기준

1) 대공연장(아트홀 맥) 사용료

(단위: 원/1회)

구분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촬영)	행사
기본대관료	625,000	1,000,000	1,250,000	1,500,000	1,750,000

2) 소공연장(플레이 맥) 사용료

(단위 : 원/1회)

구분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재즈, 오페라	뮤지컬, 대중공연	방송(촬영)	행사
기본대관료	250,000	312,500	375,000	500,000	625,000

3) (생 략)

4) 종합체육관 사용료

구분	사용료
기본대관료	50,000원/1시간

5) 소체육관 사용료

구분	사용료
기본대관료	10,000원/1시간

 ----- 전
 액을 -----..

10) (현행과 같음)

나목. 개별기준

1) -----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 사용시간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재즈	뮤지컬, 오페라	대중 음악 공연	방송(촬영), 행사
오전	3시간	900,000	1,200,000	1,500,000	1,800,000	2,100,000
오후	4시간	1,200,000	1,600,000	2,000,000	2,400,000	2,800,000
심야	1시간	3,0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2) -----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 사용시간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재즈, 뮤지컬, 오페라, 대중 음악 공연	방송(촬영), 행사
오전	3시간	270,000	390,000	540,000
오후	4시간	360,000	520,000	720,000
심야	1시간	90,000	130,000	180,000

3) (현행과 같음)

4) 체육관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종합체육관	1시간	50,000
소체육관	1시간	10,000

<삭 제>

6) 그 밖의 시설 사용료

(단위: 원/1회)

구분	사용료	
스튜디오1 (다목적홀)	30,000원/1시간	
스튜디오2 (문화동 2층)	30,000원/1시간	
스튜디오3 (문화동 3층)	연습	35,000원/1시간
	공연	55,000원/1시간
	행사	85,000원/1시간
	전시	150,000원/1일
연습실	15,000원/1시간	
전시실(갤러리 맥)	15,000원/1시간	

7) (생략)

제2호.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목. (생략)

나목. 개별기준

1)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분	사용료	
문화강좌프로그램	10,000 ~ 4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30,000 ~ 200,000
	중·고생 이하	25,000 ~ 200,000
유아·초등생 교육프로그램	25,000 ~ 150,000	
문화예술전문과정	40,000 ~ 200,000	
기타	· 위 사용료는 월 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부터 주 5회까지 기준임	

2)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단위 : 원/월)

6) ----- 기본대관료

(단위: 원/1회)

구분	기본사용시간	기본대관료	
스튜디오1(다목적홀)	1시간	30,000	
스튜디오2(문화동 2층)	1시간	30,000	
스튜디오3 (문화동 3층)	연습	1시간	35,000
	공연	1시간	55,000
	행사	1시간	85,000
	전시	1일	150,000
연습실	1시간	15,000	
전시실(갤러리 맥)	1시간	15,000	
공연장테라스(3층)	1일(평일)	300,000	
	1일(주말)	330,000	
	· 공연장, 갤러리 대관 시에만 대관 가능		
	· 운영기간·시간: 4월~9월, 09:00~18:00		

7) (현행과 같음)

제2호.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목. (현행과 같음)

나목. 개별기준

1)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비고	
문화강좌프로그램	10,000 ~ 40,000	월 기준 -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30,000 ~ 200,000
	중·고생 이하		25,000 ~ 200,000
유아·초등생 교육프로그램	25,000 ~ 150,000		
문화예술전문과정	40,000 ~ 200,000		
단기 프로그램	2,000 ~ 20,000	일 기준	

2)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이용		그룹지도
		정기	1일입장	
사용료	25,000 ~ 80,000	25,000 ~ 70,000	1,500 ~ 4,500	100,000 ~ 200,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단, 일요일은 제외) ·공휴일의 1일 자유이용은 20퍼센트 할증 			

나) (생 략)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분	정기	골프 아카데미	개인지도	1일입장	
				기본1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55,000 ~ 100,000	30,000 ~ 100,000	100,000 ~ 150,000 (1시간/1회)	4,000	2,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생/유아 강습은 주2~5회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공휴일 1일입장은 20퍼센트 할증 				

제3호. 독서실

구분	성인	중고생
월 사용료	30,000원	15,000원
1일 사용료	1,000원	500원

구분	강습료	자유수영 이용료		그룹지도 강습료
		정기	1일 입장	
사용료	25,000 ~ 80,000	25,000 ~ 70,000	1,500 ~ 4,500	100,000 ~ 200,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공휴일, 모자수영·가족수영·월 자유수영회원은 제외) ·공휴일의 1일 입장 자유수영 이용료는 20퍼센트 할증 			

나) (현행과 같음)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분	정기	골프 아카데미	개인지도	스크린 타석	1일 입장	
					기본 2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55,000 ~ 100,000	30,000 ~ 100,000	100,000 ~ 150,000 (1시간/1회)	7,000 ~ 20,000	6,000	2,000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할증 					

제3호. 삭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참전유공자 등의 센터 사용료에 대한 할인 규정 마련
- 관련 조문: 제13조의3(할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13조의3(할인) 대상 추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문화예술과 서은영 (☎ 3153-8352)